#### [서식 예] 임가공료청구의 소(변제기가 다른 경우)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임가공료청구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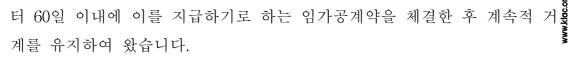
## 청 구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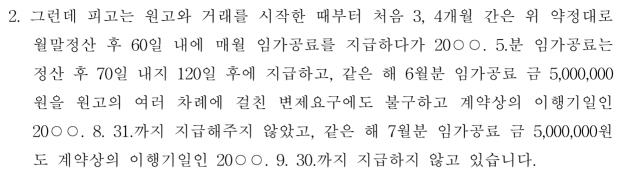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금액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 ○○. 9. 1.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섬유제품의 염색 및 날염(捺染)가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섬유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출용 생원단(生原緞)을 염색·가공하여 납기 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날염공장이나 봉제공장에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가 생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한 1개월씩을 단위로 매월 말일에 임가공료를 정산하여 그로부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가공료 합계 금 10,000,000원 및 위 금액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 9. 1.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임가공계약서1. 갑 제2호증거래명세서1. 갑 제3호증통고서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 1통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 소장부본1통1. 송달료납부서1통

20 O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조멸시효일람표 MANA)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기계 전체 전체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